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명시 >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10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황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8. 12.

다. 회 부 일: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② (생략)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u>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u>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 ----- ---- <u>전담기관을</u> ----- -----.
<u><신설></u>	제11조의3(<u>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u>) ①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u>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u> ③ <u>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u> ④ <u>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u>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제13조의2(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2. <u>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 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¹⁾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각종 정보화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해오고 있음.²⁾

- 1)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한국문화정보원 기관 현황은 [참고1] 자료, 관련사업 및 추진현황은 [참고2] 자료 참조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 문화정책의 조사·연구·개발 전담 기관으로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³⁾ 한국문화정보원은 개별법에 설립근거 없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일반 규정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국세청 등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법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협조받기 어렵고, 대국민 문화정보서비스인 ‘문화포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정보화업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소속·소관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유 데이터의 연계·수집에 한계가 있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3)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등 대부분의 정보화 전담기관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재정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법」),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의 사례와 같이 정보화 전담기관의 설립·운영 근거가 별도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⁵⁾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⁶⁾

다만,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로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11조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관련 근거를 삭제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정보원 설립의 근거가 별도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할 경우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적정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6

5) 각 부처별 정보화 기관 운영 현황 및 법적 근거는 [참고3] 자료 참조

6)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그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의 법정 법인화 현황은 [참고3] 자료 참조

참고1

한국문화정보원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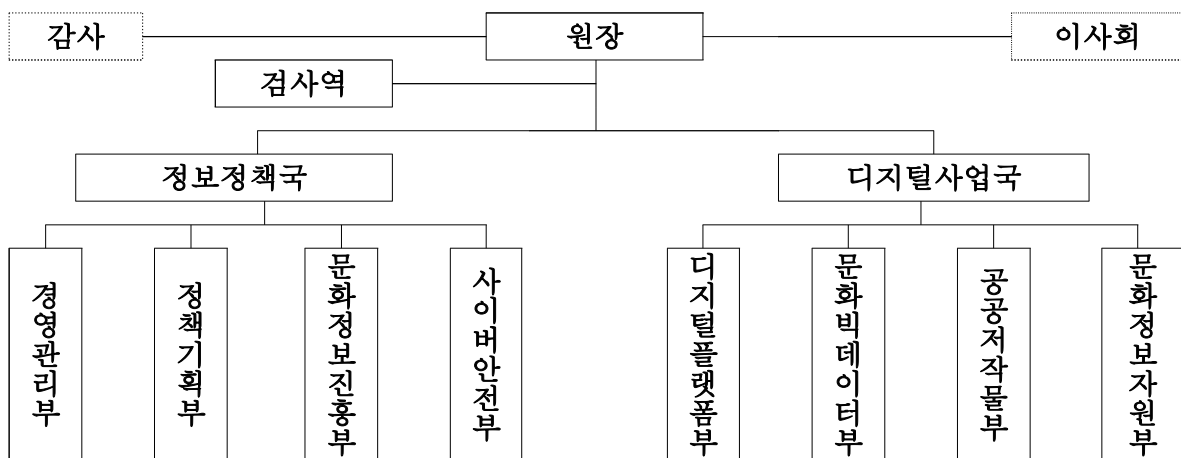
□ 설립목적

-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

□ 주요연혁

- 2002. 12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설립(설립근거 : 민법32조)
- 2013. 1 :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4. 9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문화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문체부 고시 제2017-29호)
- 2016. 3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개소(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제16조)
- 2018. 7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전담 운영(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
- 2021. 4 :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새 비전 선포
- 2021. 7 :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 3, 문체부 고시 제2021-45호)
- 2022. 9 : 국가지식정보연계 11개기관 디지털 개방지원 공동업무협약 체결
- 2023. 1 : 문화체육관광 가명처리지원센터 개소
- 2024. 4 :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서비스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개시

□ 기구 : 2국 8부



□ 예산현황

- 2024년 예산 214억원 (국고 201억원 및 자체 13억원)

참고2

관련사업 및 추진현황

○ 한국문화정보원 주요 사업 및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단위:백만원)
2022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10,35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683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910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및 운영	1,562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K-메타버스) 조성	285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94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3,010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810
	전통문양 산업화 활용지원	500
	메타버스 활용 전통문화 활성화	1,888
	계	23,942
2023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10,39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674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893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및 운영	1,548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K-메타버스) 조성	2,475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915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3,093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1,010
	전통문양 산업화 활용지원	400
	메타버스 활용 전통문화 활성화	1,888
	계	26,293
2024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9,42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671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17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및 운영	1,548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	37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290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2,478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1,220
	메타버스 활용 전통문화 활성화	850
	계	20,067

-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문화포털),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및 기획, 문화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 문화 빅데이터 생산·수집·가공·유통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등
-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 114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탐지·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 ▶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실감형 콘텐츠를 공동 활용 플랫폼을 통해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전 국민이 체험 및 향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및 운영** : 안내로봇(큐레이션+로봇+챗봇(AI)+실감형 미디어)을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에 적용하여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 제공
- ▶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 : 디지털 문화자원을 수집·개방하여 메타버스 등 산업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융합 플랫폼 구축
-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 관련 인력, 보조금 등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보를 문체부, 지자체(관련부서), 지역 문화기관에게 통합적으로 제공
-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이용 환경 조성, 국민의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 문화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련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운영, 제도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등
- ▶ **메타버스 활용 전통문화 활성화** : 우리나라 전통의 원천콘텐츠를 메타버스의 창조적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참고3

정부부처 정보화 기관 현황(법정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화 기관 운영 현황

- 정부부처 업무의 정보화 추진, 소관 정보 제공 및 자원 통합활용 체계 구축·운영,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부처별 정보화 전담기관 운영(9/19개, 47%), 문체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처는 법정법인으로 운영중

연번	부처	기관명	목적	법적근거
1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능정보화 전문기관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국가통계의 개발, 진흥을 위하여 통계정보 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2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 조사, 수집하고, 교육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등)
4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화 사업 공동 추진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 지원,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7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 번	부처	기관명	목적	법적근거
8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위탁업무와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 문체부 기관 법정법인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 총괄지원 기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총 28개 중 22개 기관이 법정법인으로 운영중(78.6%)

총괄 지원	기관명	목적	법적근거
관광	한국관광공사 (준정부기관)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관광공사법
	게임물관리 위원회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제1항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체육	대한체육회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세종학당 재단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총괄·지원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영상물등급 위원회	영상물에 적절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예술의전당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총괄 지원	기관명	목적	법적근거
	국악방송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게 홍보·보급·교육하여 국악의 진흥을 도모,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의 문화 복지 향상	국악진흥법 제17조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문학 번역원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발전과 세계화	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문화 예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동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 진흥재단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 문화 확산 및 언론 산업의 진흥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한국영상 자료원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예술인복지법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한국저작권 보호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저작권법 제122조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성립)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저작권법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문화 산업	한국콘텐츠 진흥원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기반 강화,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기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